

# 예 산 총 칙

2018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85,773,800	29,573,214
일반회계	801,400,000	24,042,000
특별회계	184,373,800	5,531,214
공기업특별회계	51,600,000	1,548,000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8,600,000	858,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000,000	690,000
기타특별회계	132,773,800	3,983,214
수질개선특별회계	4,913,000	147,39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81,000	65,4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55,000	22,65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3,488,000	104,640
주택사업특별회계	824,000	24,720
치수사업특별회계	13,866,800	416,004
주차장운영특별회계	5,952,000	178,560
대지보상특별회계	311,000	9,33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88,060,000	2,641,800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2,100,000	363,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3,000	9,69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591,911천원으로 한다.(일반예비비 8,014,000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959,711천원, 내부유보금 23,618,200천원)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